

2009년 11월 10일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중국 부동산개발법인 지분인수계약 관련 중재결과

1. 2008년 8월 13일,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중국 부동산개발법인 지분인수계약 관련 중재신청”관련입니다.
2. 상기 중재와 관련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CIETAC”)은 2009년 11월 6일(이하 “중재결과일”)자로 된 중재 결정문을 통해, 1. 피신청인은 신청인 AP Alpha Investments Limited (당해 투자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100% 자회사)에게 손해배상비용 청구금액 인민폐 1천만 위안 중 인민폐 2백만 위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중재대리 관련 법률자문비용 전액 및 신청인이 CIETAC에 납부한 중재비용 미화 32,000달러 중 80%를 부담할 것, 2. 본 지급금액은 중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 완료할 것, 3. 본 중재결과는 중재결정일로부터 효력을 발하며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발한다 등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신청인의 중재대리인(중국 내 법률사무소)은 본 중재결정문을 2009년 11월 9일에 접수하였습니다.
3. 이에 당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금액의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관련공시자료:

2007년 5월 22일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부동산 계약체결”

2008년 8월 13일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중국 부동산개발법인 지분인수계약 관련 중재신청”

문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부동산투자1본부 장국무 (02-3774-1607)

끝.